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설 기 준
기본시설	1. 강의실 : 교육인원 1명당 1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실기·실습실 : 교육인원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삭제 <2015.1.28.> 4. 어린이집: 전용면적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육인원 1명당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 교수연구실 및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하되 겸용할 수 있다. 6. 화장실·급수시설·소방시설·방음장치·채광·환기·냉난방·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시설	세미나실·자료실·휴게실·체육시설·기숙사·양호실, 그 밖에 여가선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 수 있다.

※ 비 고: 교육훈련시설에서 부설 또는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훈련시설의 기본시설로 인정하되, 교육훈련시설과 동일한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한다.

2. 교육훈련시설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교수요원의 수	자 격 기 준
전 임 교 수	교육인원 50명당 1명	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외 래 교 수		1. 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비 고: 보육 관련 각 과목은 별표 4 및 별표 5의 교과목을 말한다.